

2025 CAAs(아시아지역위원회)

제15회 몽골 총회 참관기

오 재 창

대한공증인협회 부협회장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 공증담당변호사

1. 들어가며 – 간략한 회의 일정 및 몽골 소개

2025. 6. 25.(수)부터 28.(토)까지(공식 회의 일정) 4일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공증인회 주최로 2025년도 CAAs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CAAs(아시아지역위원회)는 Comision de Asuntos Asiaticos(라틴어)의 약어¹⁾로서 국제공증인연합회(UINL²⁾, 이하 ‘UINL’이라고 함) 산하 대륙별 위원회(Continental Commissions) 중 아시아 지역 회원국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CAAs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레바논 등 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2025년도 회의에는 불참한 인도네시아와 화상회의로 참가한 레바논을 제외한 7개 회원국이 직접 참석하였고, 국제공증인연합회(UINL) 회장과 독일,

1) CAAs(라틴어)의 프랑스어 표기는 Commission des Affaires Asiatiques 이며, 영어 표기는 Asian Affairs Commission입니다.

2) UINL은 194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 회의(International Congress)에서 설립된 International Union of Latin Notaries(라틴계 국제공증인연합회, 영어 표기)에 기원을 두고 있고, 현재는 ‘Latin’을 제외한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영어 표기)로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크로아티아 협회 소속 공증인들이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4일간 진행된 행사를 요약하면 첫째 날(6. 25.)에는 공증인법 동향에 관하여 국제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날(6. 26.)에는 2025년도 CAAs 총회가 개최되어 오전에는 아시아 회원국들이 자국의 원격(화상) 공증에 관한 발표를 하였고, 오후에는 각 회원국별 2024년 활동 보고 및 차기 위원장 선거를 했습니다. 셋째 날(6. 27.)에는 몽골공증제도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마지막 넷째 날(6. 28.)에는 몽골공증인회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 대한공증인협회(KNA)는 협회장 박종순, 부협회장 오재창, 사무국장 김창호 등 3인이 참석을 하여, 협회장이 CAAs 총회에서 우리 협회의 2024년 활동 보고를, 부협회장인 필자가 한국의 원격(화상) 공증에 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몽골은 동북아시아 국가로서 국토 면적은 1억 5,641만 1,575ha로(2022년, 국토교통부) 한반도의 약 7배에 달하고, 전체 인구는 약 338만 6,015명(2022년, 통계청), 국내총생산(GDP)은(는) 약 144억 4,195만 달러(\$)(2022년, 한국은행) 정도로 세계 약 125위권에 달하는 개발도상국 중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국가이며, 수도는 울란바토르입니다.

또한 몽골의 역사에 관해서도 알아보면, 몽골은 13세기 칭기즈 칸과 그 후손들이 한 때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한 제국을 이루었으나, 나중에 쇠락하여 청나라는 물론 1911년까지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1921년 혁명을 일으켜 몽골 인민공화국을 1924년에 설립한 후,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다가 민주화되어 1992년부터는 현재의 민주공화정 체제인 몽골국이 되었습니다.

2. 한국 출발부터 몽골 울란바토르 도착 여정 및 첫째 날(25일) 행사(국제 세미나) 소개

한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까지는 비행기로 3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단거리인 관계로, 6. 25.(수) 인천공항에서 오전 8시 10분 출발하여 그곳 몽골 시각으로 10시 50분에 칭기즈 칸 국제 공항에 도착하였는데, 도착을 하니 우리 일행을 맞이하고 안내하기 위한 몽골공증인회 소속 한드마 바타(Khandmaa Bataa) 공증인이 차량을 준비하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드마 공증인은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신데, 4일 일정 내내 우리 일행을 전담하여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이동 장소로 함께 이동하여 주고, 우리들이 몽골에서 체류하는 동안 필

요한 것, 궁금한 것 등을 해결해 주는 전담 비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한드마 공증인의 차를 타고 1시간 30분 이상 이동하여 먼저 4일 동안 우리가 머물 숙소인 블루 스카이 호텔(The Blue Sky Hotel Tower)에 오후 2시경 도착한 후 각자 짐을 풀었는데, 같은 호텔에서 2시부터 국제세미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어 짐을 풀자마자 곧바로 행사장으로 이동하여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공증인법 발전 동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세미나에서는 독일, 프랑스,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몽골 공증인협회를 대표한 공증인들, 공증 전공교수 등이 자국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공증실무에서 인공지능(AI) 적용, 프랑스 및 우즈베키스탄의 공증실무에서 조정 실무, 독일 및 몽골의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공증 실무 등에 관하여 각국 공증인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곧이어 몽골의 민사법원 판사가 공정증서 집행문에 대한 법원의 확인 절차에 대한 발표를 한 후,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원 대학원장이 전체 주제에 대한 토론 및 질의 응답을 주재함으로써 오후 5시경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국제세미나 이후 촬영한 참가자 단체 사진입니다.

국제세미나를 마친 후에는 6시 30분경 근처의 ASEM Villa 내 “Hun Theatre”로 이동하여 저녁을 먹으면서 몽골 전통 무예 등 간단한 공연을 보는 것으로 첫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 회의 둘째 날(26일) 행사(제15회 CAAs 총회) 소개

우리 일행은 둘째 날(26일, 목요일) 오전 7시쯤 일찍 아침식사를 한 후, 한드마 공증인과 함께 제15회 CAAs 총회가 개최되는 샹그리라(Shangri-la)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샹그리라 호텔에서 등록을 마치고 9시부터 몽골공증인회장 겸 2025년도 CAAs 위원장, 몽골 국회의원과 법무내무부 장관, UINL 회장인 리오넬 갈리에즈(Lionel Galliez), UINL의 아시아지역 부회장인 중국 출신 덩 지아밍(Deng Jiaming) 등이 개회사 및 축사를 하였는데, 몽골 장관이 다른 주요 행사에 참석하고 거의 1시간 이상 늦게 오는 바람에 개회식이 상당히 지연되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곧이어 아시아 회원국의 각 대표자가 자국의 원격(화상) 공증의 법적 규제와 실무에 관하여 발표하는 시간이 1부, 2부로 나뉘어서 이뤄졌는데, 오전 1부 세션에서는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에서, 2부 세션에서는 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몽골 순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부 세션에서 필자가 한국에서의 원격(화상) 공증의 법적 규제와 실무에 대하여 영어로 약 15분 정도 발표를 하였는데, 한국에서 원격 공증이 발전해 온 과정과 현재 국회에서 전자공증제도와 관련하여 논의중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최근 동향까지 관련 법제 발전 과정과 실무현황에 관하여 간략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 필자가 원격(화상) 공증에 관한 한국의 법적 규제와 실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 원격(화상) 공증이 이뤄진 건수가 201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1만 건 정도에 불과해서 그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다만 법무부가 2023년 1월부터 전자공증 제도 고도화 사업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고, 2025년 2월 국회에 제출된 전자공증 제도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가까운 장래에는 한국에서 전자공증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세션은 12시 30분에 마쳤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 곧바로 2시부터 3시 30분경까지 1시간 30분 정도 2024년에 이뤄진 협회 주요 활동에 관하여 각국 대표들이 발표(보고)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협회를 대표하여 박종순 협회장이 대한공증인협회의 주요 활동에 관해 영어로 15분 정도 발표를 잘 하였고, 각 회원국 대표자들의 자국 공증 현황에 관한 발표(보고)를 3시 30분경 마친 후에는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오후 4시경부터 다음 회기인 2026년도 CAAs 집행부 임원 선출 등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박종순 협회장이 대한공증인협회의 2024년도 주요 회무 활동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임원 선출 등에 관하여는 CAAs 회원국 대표들이 이미 여러 차례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하여 사전 조율한 내용이 취합된 상태에서, 몽골에서 개최된 총회 모임에서는 취합된 내용에 관하여 최종 투표를 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새로 선임되는 CAAs 위원장의 임기는 1년에서 UINL 집행부의 3년 임기에 맞추어 3년으로 결정되었고, 부위원장도 위원장국 소속 1명을 포함해서 2명을 추가해서 3명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차기 CAAs의 위원장 후보에는 카자흐스탄공증인회 회장을 추대하기로 하였고(최종적으로 위원장 확정은 UINL 총회의 승인으로 이뤄짐), 중국공증협회 부협회장과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의 국제위원회 위원장, 카자흐스탄공증인회 공증인 등 3명이 CAAs 차기 부위원장으로, 집행부의 재무담당자는 향후 일본공증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공증인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결의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한 후 CAAs 위원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오후 5시경 총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2025년도 CAAs 총회를 마친 후에 촬영한 단체 사진입니다.

이후 우리 일행은 걸어서 숙소 호텔(블루 스카이 호텔)로 이동한 후, 밤 7시부터 호텔 23층 블루스카이 라운지에서 몽골공증인회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였습니다.

위 만찬에는 식사도 훌륭하였지만 몽골공증인회의 회장 부인 등을 포함한 많은 공증인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특히 몽골공증인회가 회원 행사로 주최했던 노래와 춤 대회 등에서 우수한 분들이 직접 나와서 몽골 전통 악기 연주와 함께 몽골 전통 춤을 추고 노래까지 열창해 주면서 매우 인상 깊은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몽골공증인회의 공증인 회원들이 직접 만찬 장소에서 앉아 있던 각국 공증인협회 참가자들의 손을 잡고 무대로 데리고 나가서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함께 불

렀기 때문에, 우리 일행은 물론 이번 행사에 참여한 아시아 지역 회원국들은 몽골공증인회가 최대한 호의를 베풀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회의 셋째 날(27일) 행사(몽골 공증제도 설립 100주년 기념행사) 소개

가. 인상적인 UINL 아시아 지역 부회장(겸 중국공증협회 회장)과의 조찬 모임

우리 협회 집행부가 취임한 2023년부터 3년 동안 최소 1년에 1번은 CAAs 총회가 개최되었고, 우리 집행부도 모두 총회에 참석하여 함께 참석한 중국공증협회 협회장 겸 UINL 아시아 지역 부회장 텡 지아밍(Deng Jiaming)을 비롯한 중국공증협회 공증인들을 만났었는데, 중국공증협회 협회장을 비롯한 공증인들이 다른 회원국 회원들과의 만남, 교류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마치 우리를 일부러 피한다는 인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중국공증협회 회원들과 3년 동안 만나다 보니 올해 몽골 총회부터는 확실히 친해져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공증협회 회장의 임기가 올해 만료되고 새로운 회장 출마가 이미 예고된 상태여서, 다음 모임부터는 만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필자가 먼저 이번 몽골 행사를 모두 마치기 이전에 협회장만이라도 따로 잠깐 만나자고 제안했고, 중국공증협회 협회장도 이에 응해서 셋째 날(27일, 금요일) 오전 7시 호텔 식당에서 우리 협회 협회장을 포함한 3명이 만나 함께 조찬을 하였습니다.

조찬 자리에서 박중순 협회장 그리고 중국공증협회 협회장과 통역인 모두 4명이 식사를 하며 안부·개인적 관심사 정도를 잠시 나누게 되었는데, 중국 회장은 갑자기 자기가 영어를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해 대한공증인협회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못하는 점에 대하여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심지어 자신이 한참 공부할 때에 문화혁명시대를 겪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필자는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에 놀라기도 하고 감동도 받아서, 어떤 사람도 타인이 외국어 구사 여부로 타인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말과 함께 우리 한국 사람들도 현재 나이 드신 중국 분들이 문화혁명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앞으로 중국공증협회와 서로 교류하면서 잘 지내보자는 덕담을 하고 조찬을 마쳤습니다.

나. 오전 행사 소개

우리 일행은 조찬을 마치고 걸어서 숙소 호텔 인근에 있는 정부종합청사(State Palace)로 이동하여 오전 9시부터 개최된 몽골공증제도 설립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내빈으로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총리,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 변호사협회장, UINL의 리오넬 갈리에즈(Lionel Galliez) 회장과 리차드 북(Richard Bock) 명예공증인 등이 참석하여 대통령 축하 대독과 내빈들의 축사가 있었고, 곧이어 몽골 공증인 제도 설립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였으며, 법률 및 공증 분야에서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과 몽골공증인회 차드라발 바얀자르갈(Chadraabal Bayanjargal) 회장에 대한 시상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약 1시간 정도 축하 공연(성악, 몽골 전통 음악 등)이 이어진 후 12시경 오전 행사가 마무리되었고 그때부터 1시 30분까지 바로 근처 울란바토르 갤러리라는 건물에서 스테이크 정식으로 점심이 제공되었는데, 우리 일행은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소속 회장과 우즈베키스탄 내 부하라 시에서 공증을 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여성 공증인 등과 환담을 하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내며 점심을 먹었습니다.



▲ 몽골 공증제도 설립 100주년 기념식 이후 대표단 단체사진입니다.

다. 오후 행사 및 저녁 만찬 소개

몽골공증인회 측은 1시 30분경에 점심을 마친 후 자유 시간을 주었고, 오후 3시경 인근에 있는 칭기즈 칸 국립 박물관으로 초대를 해서 약 2시간 정도 관람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친 후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가 밤 7시경 다시 어제 행사를 한 상그리라 호텔 1층 연회장에서 100주년 기념 만찬이 몽골공증인회와 몽골 정부 관계자, CAAs 회원국은 물론 UINL 집행부와 다른 대륙 국가의 공증인협회 공증인들을 상대로 개최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참석자들이 매우 큰 연회장 홀에서 대부분 무작위로 둥그런 테이블에 앉아 주최 측이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맛있는 저녁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식사를 마친 후부터는 몽골에서 유명한 가수들이 여러 명 나와 몽골 전통 노래와 현대 노래는 물론 여러 나라 국가의 음악을 오랜 시간 불러주었고, 마지막 시간대에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나는 댄스 음악을 연주하며 참석자들을 넓은 무대로 불러내거나 심지어 앉아 있던 테이블 옆에서 춤을 추게 만들어 한참 동안 댄스파티가 이어진 끝에 밤 10시경 행사가 끝났습니다.

우리 일행은 러시아 공증인협회 소속 공증인들과 한 테이블에 합석하여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였는데,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에는 행사 장소가 너무 넓고, 춤추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데다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바람에 감히 함께 할 생각도 못하고 구경만 하였는데, 한드마 공증인이 6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신나게 열정적으로 춤추는 모습에 감탄을 하며 박수를 쳐 주었던 것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3년간 인도네시아(2023년), 우즈베키스탄(2024년), 이번 몽골(2025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된 CAAs 총회에 계속해서 참여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총회 등 공식 행사를 마치면 만찬 후 항상 댄스음악 등 경쾌한 음악을 틀어놓고 참석자들을 모두 무대로 나오게 해서 춤을 추게 하는 것이 공식적인 행사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함께 음악에 맞춰 서로 춤을 추다 보면 서로 친숙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로 늦은 시간까지 공식 행사에 참여하고, 그 후 저녁 식사까지 하고나면 피곤하고 졸린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춤까지 추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든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몽골 행사 만찬의 배경에는 작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CAAs 총회를 마친 후에, 우리 일행이 올해 행사를 앞두고 있던 현재 몽골공증인회 차드라발 바얀자르갈(Chadraabal

Bayanjargal)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만찬으로 제공하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많은 행사에 억지로 끌고 다니는 식의 허례허식을 피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조언(의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번 몽골 총회 행사는 작년 총회에 비하여는 훨씬 만찬 시간도 짧았고 일찍 모임도 마쳤으며, 식사 규모나 양 등에서도 허례허식이 줄어 참석자들 부담이 많이 적었습니다.

몽골에서 총회를 거의 마칠 무렵, 몽골공증인회 회장이 우리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작년 총회를 마친 후에 우리 일행이 해준 조언을 참조해서 예전에 비해 다소 조촐하지만 실질적 행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 일행에게 그런 점을 느꼈느냐면서 우리 반응을 확인하였고, 우리 일행도 이에 대하여 작년 총회에 비해 몽골 행사가 훨씬 좋았다는 덕담을 해주었는데, 우리 일행도 몽골 행사가 잘 이뤄진 데에 기여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5. 행사 넷째 날(28일) 행사(문화행사 및 만찬) 소개

가. 오전 일정 소개(몽골 공증인 사무실 견학 및 문화행사 참관)

우리 일행은 이미 4일 동안 전담해서 안내, 운전까지 해 준 몽골의 한드마 공증인과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평소 CAAs 회의 때마다 다른 나라 공증인협회의 원격 공증 실무현황이 궁금했기 때문에 한드마 공증인과 일정을 조율하여 넷째 날 문화행사를 떠나기 전에 한드마 공증인의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로 사전에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은 넷째 날(28일, 토요일)에는 숙소 호텔에서 오전 6시에 아침을 먹고 난 직후 곧바로 인근에 있는 한드마 공증인의 공증사무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한드마의 공증사무실은 울란바토르 중심가에 위치한 자그만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었고 직원 1명과 함께 근무하는 작은 사무소였는데, 이날은 토요일이라 직원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한드마는 공증이 이뤄지는 과정을 촉탁인과 공증 직원의 역할까지 1인 3역을 하며, 촉탁인이 원격으로 공증을 신청한 경우, 공증 직원이 그 신청을 접수하는 과정과 이후 공증인 본인이 자신의 컴퓨터로 서명, 날인하여 최종 공증된 문서를 보관할 때까지의 전체 과정을 직접 시연하여 주었습니다.



▲ 한드마 공증인이 몽골의 원격 공증실무를 직접 시연해 주었습니다.

필자가 그날 몽골의 원격 공증실무 시연을 통해 인상 깊었던 점은, 몽골 정부가 몽골 국민의 신원을 인증한 데이터를 모든 몽골 공증인 사무소에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신원 인증된 데이터를 공증인 사무소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공증을 촉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 곳에 소재한 공증인 사무소일지라도 직접 공증인 앞에 출석하지 않은 채 원격으로 연결하여 인적사항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공증인과 재차 화상을 통해 촉탁인 본인의 신분 확인과 공증 서류의 내용 확인을 받게 되며, 공증인은 공증을 마친 서류와 디지털화된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원격 공증이 많이 이뤄지는 것은 위와 같이 공증 촉탁인의 신원을 정부가 확인해서 그 데이터를 공증인들에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실정을 보면, 한국에서 원격 공증이 활성화되지 않은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 국민의 신원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그 자료를 원격 공증을 위해 공유해 달라는 법무부와 대한공증인협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증사무소 견학을 마친 이후, 우리 일행은 숙소 호텔로 걸어와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승차하여 8시 30분에 출발해서 10시경 천진벌덕 칭기즈 칸 기마상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1시간 정도 기마상 건물 1층에 설치된 몽골 전성기 시절 역사와 유적 관람을 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기마상 전망대를 올라가 칭기즈 칸 고향 마을 쪽과 주변 평원을 둘러보고 관람을 마쳤습니다.



▲ 가이드 겸 문화해설가로부터 몽골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점은 우리 일행이 건물 1층에서 몽골 유적을 관람할 때 한국말을 하는 가이드 분이 계셨는데, 그 가이드 분은 몽골 사람이지만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북한 말투를 구사하셨습니다. 평소 몽골 역사에 대하여 매우 궁금했지만 감히 묻기가 어려웠던 질문, 예컨대 “왜 것처럼 찬란한 몽골 역사가 어떤 이유에서 거의 200년 만에 사라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잘 대답해 주어서, 감사하였습니다.

기마상 관람 후에는 간식을 먹고 곧바로 1시간가량 몽골 유목민 촌락(Khuree, 후레)과 몽골 유목 생활에 관한 관람, 탐방을 마친 후 12시가 좀 지난 시간에 유목민 촌락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마침 옆자리에 앉은 일본 대표단 공증인들과 여러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래도 2~3년 이상 여러 차례 CAAs 총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고 특히 박중순 협회장이 박사 논문을 쓸 때 참조했던 일본 논문의 저자가 옆에 앉아 있어서 새삼스러운 인연이라는 말, 논문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어 고맙다는 말 등을 하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 점심 이후 일정, 폐회 만찬 및 다음날 한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점심 식사 후 바로 인근에서 축소판(미니) 나담 축제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정식 나담축제는 몽골의 전통 축제로서 씨름, 승마, 화살 쏘기 3개 종목에서 두 팀이 출전하여 우승팀 및 우승자를 가리는 경기를 축제형식으로 승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그곳 주최 측에서는 우리 일행을 비롯하여 CAAs 총회 참석자들을 나담 축제를 개최하는 별판과 시설물(씨름 선수들, 승마 선수들이 대기하는 천막들, 화살 거치대 등)이 위치한 곳에 둥그런 대형을 유지한 채 앉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보통 TV 혹은 사진에서 자주 본 듯한 씨름 경기 복장을 한 몽골 씨름 선수들 20여 명이 두 팀을 이루어 둥그런 경기장 안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씨름경기를 벌이면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시합을 한참 동안 하였습니다.

곧이어 우리가 있는 곳에서 3~400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승마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 신호에 맞춰 우리 쪽으로 말을 타고 달려왔는데, 그중에는 나이가 3~4살 정도로 보이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말을 자연스럽게 타면서 경기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옆에 있는 몽골분 말로는 몽골에서는 어린아이 때부터 말을 타는 것이 오랜 전통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살 쏘는 경기는 아예 CAAs 총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몽골 활을 쏘는 방식을 알려주고, 멀리 쏘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재미있게 활을 쏘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필자도 직접 몽골 활쏘기 체험을 했습니다.

점심 이후 원래 예정된 나담 축제가 끝났음에도 울란바토르 시내로 복귀하는 차량이 오지 않았고, 그러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예고도 없이 우리 일행을 비롯하여 그곳에서 축제 참가를 위해 둥그런 대형으로 앉아 있던 몽골공중인회 공중인들 및 각국 공중인들이 커다란 천막 한 곳에 다 함께 모여서(나이 드신 일본 공중인들만 제외하고) 서로 돌아가며 노래를 거의 강제로 부르게 했고, 우리 일행도 어쩔 수 없이 가수 안치환의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를 휴대폰으로 급하게 검색하여 가사를 보며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정이 오후 5시경 끝났고, 버스로 울란바토르 시내로 이동하여 마지막 폐회 만찬 이 노보텔 호텔(Novotel Hotel) 뷔페 레스토랑에서 밤 6시 30분부터 개최되었는데, 이미 버스로 시내로 돌아온 후 상당 수의 공증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떠나 폐회 만찬에는 50여 명 정도의 공증인들이 모여 조출한 저녁 식사를 하며 밤 8시경 다음 모임을 기약하고 서로 작별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폐회 만찬 호텔 밖에 우리 숙소로 가는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우리 일행을 전담하여 안내해 주고 운전까지 해준 한드마 공증인에 대한 선물 준비를 위해 걸어서 근처 마트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조그만 선물을 구매한 후 숙소 호텔에 돌아와 몽골 일정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그다음 날(29일), 숙소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드마 공증인이 우리 일행을 픽업하러 오전 9시경 왔고, 차가 막히지 않아서 1시경 정도 걸려 칭기즈 칸 국제 공항에 도착하여 1시경 비행기를 타서 한국 시각으로 오후 6시경 인천공항으로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6. 마치며

이번 몽골에서 개최된 CAAs 제15차 총회 겸 몽골 공증제도 설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느낀 소회는, 다른 나라에서 개최된 CAAs 총회 참석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비교할 때 다른 아시아 국가 내에서 공증인의 공증 업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공증인 자격도 변호사 자격보다 엄격한 점 등으로 인하여 공증인의 위상이 변호사보다 훨씬 높다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총회 등 공증인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그 나라 정부 관료의 직급이나 행사에 기울이는 관심, 노력만 보아도 공증인협회나 공증인들의 영향력을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전에 다른 나라 총회 참석 후에도 느낀 것이었지만 한국 공증실무에서 전자공증의 수준이 디지털 분야에서 우리보다 더 발전되었다고 생각한 국가들에 비하여 훨씬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기에, 앞으로 우리 공증인협회도 법무부와 함께 더욱 분발하고 국민들에게도 이에 관해 적극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 천진벌덕 벌판에 세워진 칭기즈 칸 기마상은 원형 건물을 제외하고도 그 크기가 40m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마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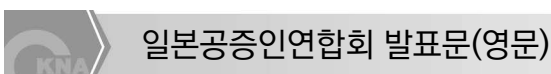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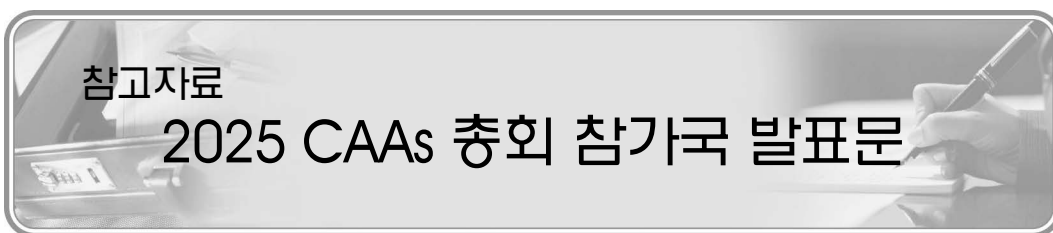
지극히 개인적 소회로는 몽골 특히 그 수도 울란바토르라는 도시는 한국 상표를 단 편의점들이 동네마다 있고 횡단보도, 신호등 체계, 시설이 한국 제도, 시설을 그대로 직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람들 외모에서도 언뜻 봐서는 우리 한국 사람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해서 그곳에서 4일 지내는 동안 마치 외국이 아닌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4일 동안 내내 우리 일행의 비서 같은 역할을 기쁘게 해준 한드마 공증인은 우리 일행이 몽골 도착 때 공항에서 픽업부터, 한국으로 귀국할 때 다시 공항까지 자신의 차로 직접 운전해서 태워 주고 우리의 전체 일정에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별 인사를 할 때에는 정말로 감사했고 서로 정이 들 만큼 친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헤어지면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였고 기회가 되는대로 한국으로 방문해서 우리가 답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꼭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총회 참석 준비를 위해 총회 의제에 관한 사전 조사와 발표자료 정리는 물론 몽골 여행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우리 협회 직원들의 수고 덕분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총회 참석, 체류를 잘 마칠 수 있었기에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번 총회, 만찬 및 문화행사까지 전체 일정, 행사 준비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 정성을 다한 몽골공증인회와 직원들의 수고, 헌신에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 **참고자료:** 이번 2025 CAAs 총회에서 발표된 자료 중 일본과 중국에서 발표한 원격 공증에 관한 자료의 원문과 번역문을 덧붙입니다.



Legal Regulations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of Remote Notarization in Japan

Fumio HIROTANI

I. Introduction

In Japan, the main notarial acts include (i) creating notarial instruments, (ii) certifying private instruments, and (iii) certifying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stock companies. The private instruments and articles of incorporation subject to certification are either paper documents or electromagnetic records. With regard to these notarial acts, the Notary Act was amended on June 6, 2023, which will come into force this fall. As a result of this amendment, notarial instruments that are currently prepared on paper will generally be digitized, and web conferencing may become an option for their preparation.

In addition, certification procedures using web conferencing will be applied not only to electromagnetic records as at present (Article 62-6 of the Notary Act, Article 9, Paragraph 7 of the Ministerial Ordinance on Affairs Concerning Electromagnetic Records to be Performed by Designated Notaries) but also to paper-based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paper-based private instruments (Article 52 and 58 of the New Notar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w Act’).

I am going to explain the gist of the New Act and introduce a discussion on the procedures and issues related to the creation of notarial instruments using web conferencing. Before that

however, I would like to explain the notarial acts using web conferencing at present.

II. The current notarial acts conducted via Web Conferencing

A. Brief history of the digitalization of notarial acts

Let me start by giving a brief history of the digitalization of notarial acts in Japan.

- (1) In April 2000, the electronic notarial system was established and its full operation started in 2002. This system enabled designated notaries to certify electronic private instruments and electronic articles of incorporation (Article 26, Paragraph (2) of the Companies Act, Article 62-6 of the Notary Act).
- (2) Since April 1, 2007, applications for certification have been able to be filed through the Ministry of Justice's designated online system. However, because clients were required to acknowledge their electronic signature before the notary, they must still appear at the notary's office.
- (3) Since March 29, 2019, electronic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electronic private instruments have been able to be acknowledged via web conferencing.
- (4) As of March 1, 2024, the in-person examination by a notary for the certification of electronic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principle, has begun to be conducted via web conferencing, unless the incorporator or their ag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lient” in this section) specifically requests otherwise.

B. The current notarial acts via Web Conferencing

As I mentioned, web conferencing is already in use for certifying electronic private instruments and electronic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this explanation I will outline the procedures and current application of certifying electronic article of incorporation.

1. Procedures

- (1) The client prepare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sends them via email to a notary for preliminary check.
- (2) The client submit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with their digital signature to the notary for certification using the Ministry of Justice's designated online system.

- (3) The client and the notary coordinate the schedule for the in-person examination.
- (4) The client pays the required fee in advance for the certification.
- (5) The notary emails the URL for the web conference to the client.
- (6) At the scheduled time, the client clicks on the URL to begin an in-person examination via web conferencing with the notary. At that time, the client presents a photo ID, which the notary verifies and takes a screenshot and prints it out for safekeeping. The notary then confirms that the client acknowledges that the digital signature o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s their own (Article 62-6, Paragraph 1, Item 2 of the Notary Act).
- (7) After the web conference is completed, the notary reviews the electronic articles of incorporation, verifies the authenticity of the digital signature, adds their own digital signature, and then sends the certified electronic articles of incorporation back to the client on line

2. Frequency of Use of Web Conferencing

As I explained earlier, as of March 2024, the certification procedure for electronic articles of incorporation has, in principle, been conducted via web conferencing. But in practice, the usage remains infrequent, as judicial scriveners and other professionals who are delegated by the incorporator to prepar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prefer not to use web conferencing. Based on my observation, the judicial scriveners and other professionals who use web conferencing for certification are typically limited to those whose offices are located far from the notary office they commissioned for the certification.

III. Overview of the New Act

As I mentioned, the New Act strengthens the digitalization of notarial processes, with a key focus on digitalizing the creation of notarial instruments, including through the integration of web conferencing technology.

The main points of the amendment are as follows:

A. When commissioning notarial instruments, clients will be able to provide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s online, instead of paper-based registered seal certificates which are the most trusted identification tools in Japan, to verify their identity (Articles 28 and Article 32, Paragraph 2 of the New Act).

- B. Procedures, such as making statements to a notary on the content of a notarial instrument, which are currently carried out in person at notary offices, will be able to be carried out via web conferencing (Article 37, Paragraph 2 and Article 40, Paragraph 3 to 5 of the New Act).
- C. In principle, notarial instruments, which are created and preserved in paper form at present, will be created and preserved in electromagnetic records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New Act). And certificates for notarial instruments will be able to be provided in electromagnetic records as well as in writing (Articles 43-45 of the New Act).

IV. Creation of Notarial Instruments via Web Conferencing

I would now like to outline the provisions of the New Act and summarize discussions so far regarding creating notarial instruments via web conferencing.

A. Requirements for using Web Conferencing

The New Act stipulates the following requirements for creating notarial instruments via web conferencing:

- (a) A client makes a request, and
- (b) A notary acknowledges that the request is reasonable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New Act).

If either of these requirements are not met or if there are two or more clients and one of them raises an objection, web conferencing cannot be used, and the procedure will instead take place in person before a notary.

Under the New Act, nearly all types of notarial instrument can be processed via web conferencing. However, one exception provided by the New Act is the declaration of intent to provide a guarantee. This exception aims to prevent individuals from becoming guarantors too easily without fully understanding the risks involved. Allowing the use of web conferencing in such cases was deemed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system (Article 37, Paragraph 3 of the New Act, Article 465-6, Paragraph 1 of the Civil Code).

B. Reasonable cases for Web Conferencing

For web conferencing to be used in creating a notarial instrument, a notary must determine its reasonableness in the specific case. The Regulation Committee of Japan National Notaries Association is expected to discus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ts reasonableness. According to a report prepared in March 2023 by the “Council of Practitioners on Digital Notarial Practice”, a committee of lawyers, notaries and other practitioners established in the Civil Affairs Bureau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fulfilment of this requirement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the 'necessity' and 'acceptability' of web conferencing.

The report highlights specific cases where web conferencing is particularly necessary:

- (a) Cases where it is difficult for the client to visit a notary office due to their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or employment status,
- (b) Cases where the client is in an area where access to a notary office is difficult,
- (c) Cases where the client prefers to avoid meeting the other party in person, such as during making notarial instrument for divorce benefits, due to domestic violence.

Next, regarding ‘acceptability’:

- (a) For notarial instruments used for business purposes, where commissioning by an agent is possible, the use of web conferencing may be widely permitted.
- (b) With regard to wills, if the probability of subsequent disputes is low, such as in the case of a middle-aged testator or a testator without heirs making a bequest to a charity, special consideration may not be necessary, but for other types of wills where the subsequent disputes are highly probable, only if the above “necessity” is high, it should be deemed reasonable to use web conferencing.

Bearing the council’s report in mind, we must consider the pros and cons of using web conferencing on a case-by-case basis when it is requested.

C. Procedure for Notarial Instruments Using Web Conferencing

- (1) A client communicates with a notary via email to finalize the draft text.
- (2) The client must provide necessary documents, such as a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a digital certificate, or other identity-verifying documents (Article 28 of the New Act).
If the client chooses a digital certificate, they must digitally sign the document, attach

the required certificate, and send it to the notary online.

- (3) The client schedules a web conferencing appointment.
- (4) The notary initiates the meeting using Microsoft Teams on a computer dedicated to creating electronic notarial instruments, and the client joins by clicking the URL provided in the email.
- (5) The notary asks the client to present their photo ID to the camera, and records an image capturing the client along with their photo ID and surroundings. The surroundings must be recorded to ensure that the client is in an appropriate location for web conferencing.
- (6) The notary displays the draft document on the screen using Teams screen sharing and reads it out loud, confirming with the client that the content is correct and amending it if necessary.
- (7) Once confirmed, the client and the notary electronically sign the document using a stylus (a touch pen).
- (8) The notary downloads the signed electronic file to a computer dedicated to creating electronic notarial instruments, launches Adobe Acrobat and applies MDP (Modification Detection Prevention) signature to it.
- (9) The electronic notarial instrument is stored in a storage management system (SharePoint) in the cloud, and Azure (cloud) is used for their registration and retrieval.

D. The prospect for the use of Web Conferencing

It is unknown how frequently web conferencing will be used in creating a notarial instrument. However, as this method requires electronic signing with a stylus on the client's side and a device with screen-sensing capabilities, it is expected that the use of this method will be limited. At least for the time being, it may only apply to cases involving professionals and banks that do not find these preparations and tasks troublesome.

V. Conclusion

This report outlined the provisions of the New Act, which enables most of notarial acts to be conducted via web conferencing, and discussed its practical implementation.



일본공증인연합회 발표문(국문)

일본 원격공증의 법적 규율과 실무적 시행

공증인 후미오 히로타니

I. 서론

일본에서의 주요 공증 행위에는 (i) 공정증서 작성, (ii) 사서증서 인증, (iii) 주식회사의 정관 인증이 포함됩니다. 인증 대상인 사서증서와 정관은 종이 문서이거나 전자문서(기록)입니다. 이러한 공증 행위와 관련하여, 2023. 6. 6. 공증인법이 개정되었으며, 금년 가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의 결과, 현재 종이로 작성되는 공증문서는 원칙적으로 전자화되며, 웹 화상회의를 활용한 작성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현재는 전자기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공증인법 제62조의6, 지정공증인이 수행하는 전자기록에 대한 사무에 관한 장관령 제9조 제7항) 웹 화상회의 인증 절차가 종이 기반 정관 및 사서증서에도 적용됩니다(개정 공증인법 제52조, 제58조. 이하 “개정법”이라 함).

본 보고서에서는 개정법의 요지를 설명하고, 웹 화상회의를 통한 공정증서 작성 절차와 관련된 쟁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웹 화상회의 공증 행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I. 현재 웹 화상회의를 통한 공증 행위

A. 공증 행위 전자화의 간단한 역사

일본에서의 전자공증 관련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1) 2000년 4월에 전자공증제도가 제정되었고, 2002년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정공증인이 전자 사서증서와 전자 정관을 인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회사법 제26조 제2항, 공증인법 제62조의6).
- (2) 2007년 4월 1일부터 법무성이 지정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인증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촉탁인은 여전히 공증인 앞에서 자신의 전자서명을 확인받아

야 했으므로,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습니다.

- (3) 2019년 3월 29일부터 전자 정관 및 전자 사서증서의 인증 절차가 웹 화상회의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 (4) 2024년 3월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전자 정관 인증을 위한 공증인의 대면 확인이 웹 화상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다만 발기인이나 그들의 대리인(이하 “촉탁인”)이 특별히 요청할 경우에만 대면 방식이 유지됩니다.

B. 현재의 웹 화상회의 공증 절차

현재 전자 사서증서와 전자 정관의 인증에서 웹 화상회의가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자 정관의 인증 시 그 절차와 적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절차

- (1) 촉탁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공증인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합니다.
- (2) 촉탁인은 디지털 서명을 부여한 정관을 법무성 지정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 (3) 촉탁인과 공증인은 대면 확인 일정을 조율합니다.
- (4) 촉탁인은 인증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합니다.
- (5)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웹 화상회의 URL을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 (6) 예정된 시간에 촉탁인은 해당 URL을 클릭하여 화상회의에 접속합니다. 이때, 촉탁인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증인은 이를 확인한 뒤 화면을 캡처 및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또한,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정관의 디지털 서명이 촉탁인 본인의 것임을 확인합니다(공증인법 제62조의6 제1항 제2호).
- (7) 화상회의 종료 후, 공증인은 전자 정관을 검토하고 디지털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한 뒤 자신의 디지털 서명을 추가하여 인증된 전자 정관을 촉탁인에게 온라인으로 송부합니다.

2. 웹 화상회의 이용 빈도

언급했다시피, 2024년 3월부터 원칙적으로 전자 정관 인증 절차가 웹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기인의 위임을 받아 정관을 작성하는 법무사 등 전문가들은 웹 화상회의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 빈도

는 낮은 편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공증사무소와 거리가 먼 지역에 위치한 법무사, 전문가들만이 주로 웹 화상회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III. 개정법 개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법은 공증 절차의 전자화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웹 회의 기술의 통합을 통한 공정증서 작성의 디지털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 촉탁인은 본인 확인을 위해 일본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본인 확인 방법인 종이 기반 인감증명서 대신 온라인으로 디지털 서명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28조, 제32조 제2항).
- B. 현재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증서 내용 확인 등과 같은 진술 절차가 웹 화상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37조 제2항, 제40조 제3~5항).
- C. 현재 종이 형태로 작성·보존되는 공정증서는 원칙적으로 전자 기록물로 작성·보존됩니다(개정법 제36조 제1항). 또한, 공정증서의 정본 등도 전자기록 또는 서면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43~45조).

IV. 웹 화상회의를 통한 공정증서 작성

이제 개정법의 조항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웹 화상회의를 통한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자 합니다.

A. 이용 요건

개정법은 웹 화상회의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에 대해 아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촉탁인이 요청할 것,
- (b) 공증인이 그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것(개정법 제37조 제2항).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거나, 촉탁인이 2명 이상인데 그중 1명이 반대할 경우에는 웹 화상회의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개정법에 따라 거의 모든 종류의 공정증서는 웹 화상회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 규정하는 한 가지 예외는 보증의 의사표시입니다. 이 예외는 개인이 관련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쉽게 보증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경우 웹 화상회의를 허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개정법 제37조 제3항, 민법 제465조의6 제1항).

B. 합리성 판단 기준

공정증서 작성에 웹 화상회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해당 사안에서 그 합리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본공증인연합회 규제위원회가 그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성 민사국이 설치한 “디지털 공증 실무자 협의회(변호사·공증인 등 실무가 포함)”가 2023년 3월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합리성은 ‘필요성’과 ‘수용 가능성’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 해당 보고서는 웹 화상회의가 특히 필요한 특정 사례를 강조합니다:
 - (a) 신체·정신적 상태 또는 직업상 사유로 공증사무소 방문이 곤란한 경우
 - (b) 공증사무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c) 상대방과 직접 대면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예: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위자료 관련 공정증서 작성 시)
-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 (a) 업무상 목적의 공정증서로서 대리인 임명이 가능한 경우 웹 화상회의의 사용이 넓게 허용될 수 있음.
 - (b) 유연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없는 중년 유언자가 자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처럼 분쟁 가능성이 낮다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높을 때에만 웹 화상회의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야 함.

위원회의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웹 화상회의 사용을 요청받을 때 각 사례별로 장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C. 구체적 절차

- (1) 촉탁인은 공증인과 이메일로 초안 작성을 완료합니다.
- (2) 촉탁인은 인감증명서, 디지털 인증서, 기타 본인 확인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개정법 제28조). 디지털 인증서를 선택한 경우, 촉탁인은 해당 문서에 디지털 서명을 부여하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공증인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3) 촉탁인은 웹 화상회의 일정을 예약합니다.
- (4) 공증인은 전자공증 전용 컴퓨터에서 Microsoft Teams를 사용하여 회의를 개설하고, 촉탁인은 이메일로 전달받은 URL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 (5)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카메라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신분증 및 주변 환경과 함께 촉탁인을 캡처한 이미지를 기록합니다. 주변 환경은 촉탁인이 웹 화상회의를 위한 적절한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록되어야 합니다.
- (6) 공증인은 Teams 화면 공유 기능으로 초안을 제시하고 낭독하며, 촉탁인인에게 확인받고 필요 시 수정합니다.
- (7) 확인할 때, 촉탁인과 공증인은 스타일러스(터치펜)를 사용해 전자서명을 합니다.
- (8) 공증인은 서명된 전자 파일을 전자공증 전용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고 Adobe Acrobat을 실행한 후 MDP(위·변조방지) 서명을 적용합니다.
- (9) 전자 공정증서는 클라우드 기반 문서 관리 시스템(SharePoint)에 저장되며, Azure(클라우드)를 통해 등록 및 검색됩니다.

D. 전망

웹 화상회의를 통한 공증문서 작성이 얼마나 자주 활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촉탁인이 스타일러스와 화면 인식 기능이 있는 단말기를 준비해야 하는 등 준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문가나 은행 등 이러한 절차를 번거롭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활용될 가능성이 큼니다.

V.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개정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분의 공증 행위가 웹 화상회의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음을 개관하고, 그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중국공증협회 발표문(영문)

Research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Remote Video Notarization



汇报人:王剑 时间:2025.06.26



CONTENTS

- 01 Current Development of Remote Video Notarization in China
- 02 Application Scenarios & Case Studies
- 03 Technological & Legal Integration
- 04 Innovative Applications

01 | Current Development of Remote Video Notarization in China

Development Background

01

Social Context

****Population Mobility and Pandemic Impact****
With socioeconomic growth, improve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relaxed household registration policies, and talent attraction initiatives, population mobility has increased significantly, driving demand for cross-regional legal services, including remote video notarization. The COVID-19 outbreak in 2020 further intensified overseas Chinese demand for remote notarization, as traditional in-person methods became inadequate.

02

Policy Context

****Policy Evolution and Pilot Programs****
In March 2020, the Ministry of Justice issued guidelines requiring pilot notary offices to adopt remote service capabilities. In October 2020,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eld a symposium to designate pilot programs. In May 2022, the Ministry of Justice expanded the pilot scope with detailed regulations, followed by further advancements in May 2023, authorizing 295 notary offices to collaborate with embassies and consulates.

03

Technological Context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e widespread adoption of 5G and mobile internet has enhanced video recording and transmission. Biometric identification (e.g., facial recognition) ensures secure online identity verification, while big data sharing facilitates real-time information checks. Electronic signatures have resolved document signing and transmission challenges, providing robust technical support for remote video notarization.



Development Status

Standardization Eff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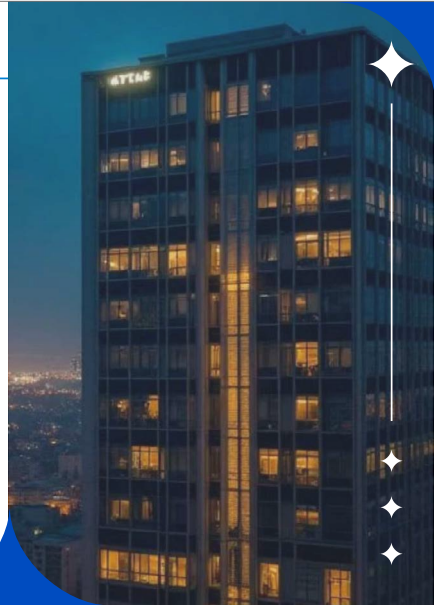
Local Rules and Guidelines

Local notary associations and offices have issued rules and guidelines to ensure lawful and stable operations, laying the groundwork for standardized practices.

Process Optimization & Stakeholder

Refinement and Feedback Integration

Notary offices refine procedures to ensure compliance and effectiveness. They actively engage with document-using authorities to incorporate feedback and adapt to societal needs.



Modes of Remote Video Notarization

01

Primary Application Scenarios

Evolution of Application Scenarios

****Initial Stage (Video + Overseas Liaison Points)**:** Verified overseas Chinese intent for domestic civil notarization.

****Second Stage (Mobile Devices + Overseas Chinese)**:** Addressed pandemic-related needs, such as real estate transactions.

****Third Stage (Mobile Devices + Domestic Citizens)**:** Extended services to quarantined individuals and prisoners.

****Fourth Stage (Remote Video + Embassies/Consulates)**:** Formalized collaboration with diplomatic missions.



02

Types of Notarized Matters

Scope of Notarization

Currently covers unilateral legal acts (e.g., powers of attorney), foreign-related civil notarization (e.g., kinship verification), evidence preservation, and certified true copies. Wills and personal-status-related acts remain excluded.



Regulatory Frameworks

Variations in Regulations

****Regional Differences****

No unified national standards exist. Regional variations include local rules and internal office guidelines.

****Local Rules****: E.g., Wenzhou's Overseas Remote Video Notarization Procedures, Jiangsu's Remote Video Notarization Standards.

****Internal Office Guidelines****: Adopted by select notary offices like Shanghai Xinhongqiao and Hangzhou Internet Notary Office.



Technological Support

Key Technological Features

****Identity Verification****: Multi-layered checks (facial recognition, live detection).

****Video Interaction****: Real-time dialogue with notaries, sometimes supplemented by panoramic cameras.

****E-Signatures****: Accepted in some regions (e.g., Hangzhou for property transactions), while others require hybrid (electronic + paper) or postal submissions.

****Security & Archiving****: Cloud storage, screen recording, or physical backups ensure tamper-proof records.



02 | Application Scenarios & Case Studies



Target Groups

Overseas Chinese

****Facilitating Domestic Affairs****
Facilitates domestic affairs via
identity verification and e-
signatures.

Domestic Individuals

****Serving Quarantined or
Incarcerated Persons****
Serves quarantined or
incarcerated persons needing
urgent notarization.



Common Notarization Types

Unilateral Acts

****Property Delegations**:** Practices vary—some offices restrict to spouses/parents, others include siblings.

Foreign-Related Civil Matters

****Nationality and Kinship Verification**:** E.g., Shanghai Xinhongqiao Notary Office.

Evidence Preservation

****Insurance Verification**:** E.g., Chongqing Liangjiang Notary Office.

Certified Copies

****Hard-to-Mail Originals**:** For documents that are difficult to mail.



Three Operational Models

Embassy Collaboration

01

****Hybrid Process**:** Combines online verification with consular witnessing (e.g., Osaka Consulate's property delegation notarization).

Direct Video Notarization

****Fully Online**:** With notary guidance (e.g., organ donation authorization).

02

Overseas Law Firm Partnership

03

****Local Lawyer Involvement**:** Local lawyers witness signings; notaries verify and issue documents (e.g., inheritance waiver declarations).



03 | Technological & Legal Integration

Essential Technologies

Identity Verification

****Cross-checking IDs****: With national databases.

Video Conferencing

****Secure Interaction****: Real-time interaction with notaries.

E-Signatures

****Legally Recognized****: Where applicable.

Security & Storage

****Compliance****: Encryption, backups, and compliance with data laws.



vs. Technological Roles



Notaries Lead, Tech Assists

****Human Oversight****: While tech aids identity checks, legal assessments remain human-driven.



Risk Management

****Balanced Approach****: Over-reliance on tech poses systemic risks; notaries must validate all evidence.



Legal-Tech Harmonization

Operational Diversity

****Regional Disparities****: Lack of national standards leads to regional differences.



Foreign Law Challenges

****Cross-Border Cases****: May require foreign law analysis.



Jurisdictional Boundaries

****Blurred Limits****: Online notarization blurs traditional jurisdictional boundaries.

04 | Innovative App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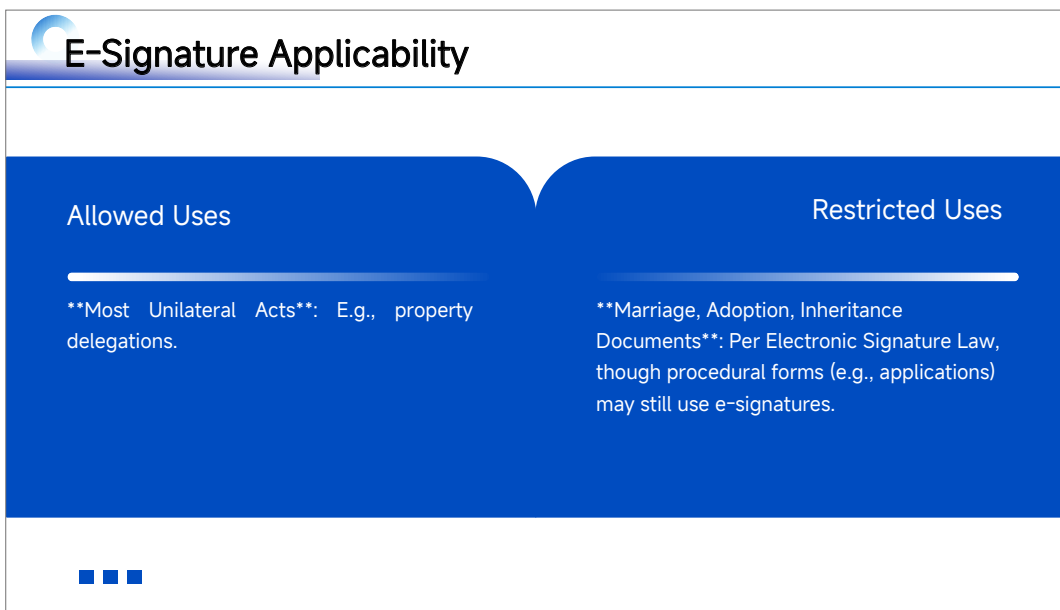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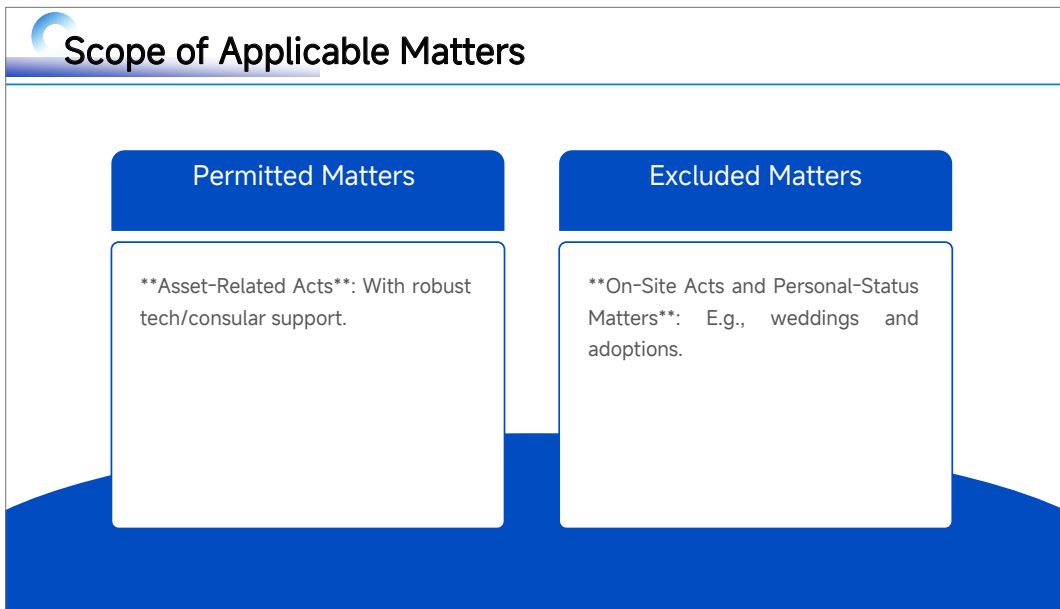
Reinterpreting the "In-Person" Principle

New Definition

****Remote Verification****: Reliable remote identity verification and sustained interaction can satisfy "in-person" requirements.

Hybrid Model

****Technology and Human Oversight****: Combines technology (e.g., video, e-signatures) with human oversight (e.g., consular witnessing).





KNA 중국공증협회 발표문(국문)

원격화상공증 발전 연구보고서

보고자: 왕젠 일자: 2025.06.26



목차

- 01 중국의 원격화상공증 현황
- 02 적용 시나리오 및 사례 연구
- 03 기술 및 법률 통합
- 04 혁신적 적용

01

중국의 원격화상공증 현황



발전 배경

01

사회적 맥락

****인구 이동과 팬데믹의 영향****

사회경제적 성장, 교통 인프라의 발전, 완화된 호적 가구 등록 정책, 인재 유치 정책 등으로 인해 인구 이동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로써 원격 화상공증을 포함한 지역 간 법률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기존의 대면 방식이 불충분해지면서, 해외 중국인들의 원격 공증 수요가 더욱 증가했음.

02

정책적 맥락

****정책 발전과 시범사업****

2020년 3월, 법무부는 시범 공증사무소에 원격 서비스 기능을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발표했음. 2020년 10월, 외교부와 법무부는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실효지침을 공동으로 개최했음. 2022년 5월에는 법무부가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시범 범위를 확대하였고, 2023년 5월에는 추가 발전 사항으로서, 295개 공증사무소가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승인했음.

03

기술적 맥락

****기술 발전****

5G와 모바일 인터넷의 보급은 영상 녹화와 전송 기능을 향상시켰음. 생체 인증 기술(예: 얼굴인식)은 온라인 신원 확인의 보안을 보장하며, 빅데이터 공유는 실시간 정보 검증을 가능하게 함. 전자 서명은 문서 서명과 전송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여, 원격 화상 공증을 위한 강력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발전 현황

표준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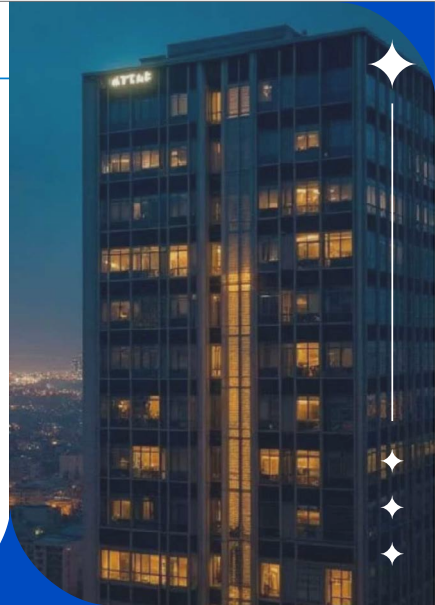
지역 규정 및 지침

지역 공증인협회와 공증사무소들은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과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표준화된 실무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프로세스 최적화 및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 개선과 피드백 반영

공증사무소는 준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함. 문서를 활용하는 관계 기관과 소통하여 피드백을 반영하고, 사회적 요구에 맞추고 있음.



원격화상공증 방식

01

주요 적용 시나리오

적용 사례의 발전

****초기 단계 (화상 + 해외 연락 거점)**:**

해외 중국인의 국내 민사 공증 의사를 확인.

****두 번째 단계 (모바일 기기 + 해외 중국인)**:**

부동산 거래 등 팬데믹 관련 수요 대응.

****세 번째 단계 (모바일 기기 + 국내 시민)**:**

격리자와 수형자에게 서비스 확대.

****네 번째 단계 (원격 화상 + 대사관/영사관)**:**

외교 기관과의 협력을 제도화.



02

공증 유형

공증 범위

현재 공증은 단독 행위(예: 위임장), 외국 관련 민사 공증(예: 친족관계 확인), 증거 보존, 등본 인증 등을 포함하고 있음. 다만, 유언 및 신분관계와 관련된 행위는 여전히 제외됨.

규제 체계

규제의 차이점

지역별 차이

통일된 국가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지역별로는 지방 규정과 사무소 내부 지침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지방 규정**:** 예) 원저우의 해외 원격 화상 공증 절차, 장쑤성의 원격 화상 공증 기준

****사무소 내부 지침**:** 상하이 신흥차오 공증사무소, 항저우 인터넷 공증사무소 등 일부 공증사무소에서 채택



기술 지원

주요 기술적 특징

****신원 확인**:** 얼굴 인식, 생체 감지 등 다층적 검증 절차.

****영상 상호작용**:** 공증인과의 실시간 대화, 경우에 따라 파노라마 카메라 활용.

****전자 서명**:** 일부 지역(예: 항저우 부동산 거래)에서는 전자 서명을 허용하나, 다른 지역에서는 전자+종이 병행 방식 또는 우편 제출을 요구.

****보안 및 보관**:** 클라우드 저장, 화면 녹화, 물리적 백업 등을 통해 위·변조 방지 기록을 보장.



02 | 적용 시나리오 및 사례 연구

주요 대상

재외 중국인

****국내 업무 지원****

신원 확인과 전자 서명을 통해 국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국내 개인

****격리자 및 수형자 지원****

긴급한 공증이 필요한 격리자나 수형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일반적인 공증 유형

단독행위

****재산 위임** :**
운영 방식은 다양하며, 일부 공증사무소는 배우자·부모로 제한하는 반면, 다른 곳은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기도 함.

외국 관련 민사 사안

****국적 및 친족관계 확인** :**
예) 상하이 신흥차오 공증사무소

증거 보존

****보험확인**:**
예) 충칭 량장 공증사무소

사본 인증

****우편 발송이 어려운 원본**:**
발송이 어려운 문서에 적용.



세 가지 운영 모델

대사관과의 협업

01

****하이브리드 방식**:** 온라인 인증과 영사 증인을 결합(예. 오사카 총영사관의 재산 위임 공증)

직접적인 영상(화상 공증)

****완전 온라인 방식**:**
공증인의 안내와 함께 진행(예: 장기 기증 승인)

02

해외 로펌과의 협력

03

****현지 변호사의 참여**:** 현지 변호사가 서명을 증인하고, 공증인이 서류를 검증 및 발급 (예: 상속 포기 신고서).



03 | 기술 및 법률 통합

필수적인 기술

본인 확인

****신분증 교차 확인****: 국가 데이터베이스 활용.

화상 회의

****안전한 상호작용****:
공증인과 실시간으로 진행

전자 서명

****법적 효력 인정****:
해당되는 경우

보안 및 보존

****준수****: 암호화, 백업 및
데이터 관련 법규 준수



○ vs. 기술적 역할



공증인 주도, 기술 보조

****사람이 감독한다****: 기술이 신원 확인을 지원하더라도, 법적 판단은 공증인이 담당함.



위험 관리

****균형 잡힌 접근****: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체계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증인이 모든 증거를 검증해야 함.



○ 법률과 기술의 조화

운영 다양성

****지역별 격차****: 국가 표준이 없어 지역별 차이가 발생함.

외국법 문제

****초국가적 케이스****: 외국법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관할 경계

****모호한 한계****: 온라인(전자) 공증으로 인해 전통적인 관할 경계가 흐려짐.

04 | 혁신적 적용

“대면” 원칙 재해석

새로운 정의

****원격 확인**** : 신뢰할 수 있는 원격 신원 확인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대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혼합 모델

****기술과 인적 감독**** : 영상, 전자 서명 등 기술적 수단과 영사 입회 등 인적 감독을 결합한 방식.

적용 사안의 범위

허용 사안

****재산 관련 행위****: 강력한 기술적 및
영사적 지원을 기반으로 함.

제외 사안

****현장(사실) 행위 및 신분 관계 사안****:
예) 결혼, 입양

전자서명 적용가능성

허용 사례

****대부분의 단독행위****: 예) 재산 위임 등

제한 사례

****혼인, 입양, 상속 관련 서류****: 전자서명법에
따라 절차적 서식(예 : 신청서)에는 여전히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음.



